

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. 6. 12 선고 2019가단61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9. 6. 1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광양시 C 임야 172㎡ 지상 별지 도면 표시 ㄱ, ㄴ, ㄷ, ㄹ, ㅁ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나)부분 창고 15.76㎡와 같은 도면 표시 ㄴ, ㄷ, ㄹ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다)부분 철재 담장(길이 31m)을 철거하고,
나. 광양시 C 임야 172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6, 7, 8, 9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가)부분 70㎡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(무변론 판결)

판사김순열

별지